

발간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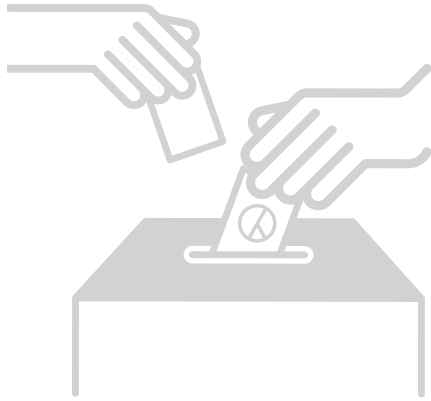
34-9761044-150008-01




초·중·고등학생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선거 매뉴얼

초·중·고등학교 교사용



 선거연수원
Korean Civic Education Institute for Democracy



학교선거 매뉴얼

발간에 즈음하여

학교선거는 학생회 임원을 학생이 직접 선출해보면서 권리와 참여의 중요성을 스스로 배워보는 중요한 민주시민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거가 학생자치활동의 핵심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은 어느 교육과정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문화는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학교선거에서 오히려 부정선거운동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례를 경험한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를 반복한다면 과거의 혼탁했던 선거문화로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 스스로 선거규정에 따라 학교선거를 관리해 보면서 공정 선거와 매니페스토, 투표참여 중요성 등 민주주의 기본제도로써 선거의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뉴얼이 학교선거를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 학교선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장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015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Contents



발간에 즈음하여

I. 학교선거 지도방향 5

II. 학교선거 전 준비사항

1. 학교선거규정 마련	10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1
3. 선거일정 관리	12

III. 학교선거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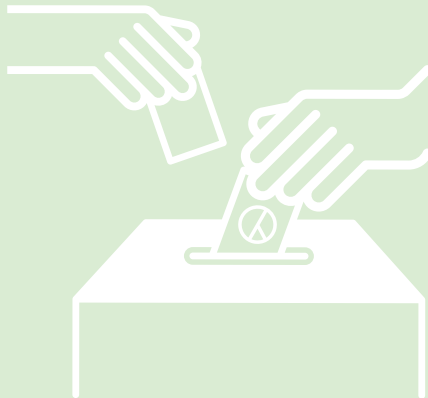
1. 학교선거관리절차	16
2. 선거관리절차별 준비사항	17
3. 학교선거 참여자 교육	37

※ 부 록

1. 초·중등학교 학생회 임원선거규정(예시)	4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안내	73
3.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안내	74



“어릴 적 투표참여 습관이
평생 투표 습관이 됩니다.”



다윈의 책임내용

-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선거관리
- 공약중심의 선거운동 확립
- 선거규정 위반자에 대한 책임 부과
-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선거



I. 학교선거 지도방향



학교선거 매뉴얼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이 학생회 임원선거의 참여를 통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의식을 형성하고, 선거에 대한 현장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천이 가능한 공약 중심의 선거운동을 정착시켜 나가며, 선거규정 위반자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규정의 권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학교 선거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선거관리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에 참여하는 전 학년의 학생대표들이 고루 참여하여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합니다.
- 선거관리의 모든 절차는 각 학교에서 교칙으로 정한 선거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되,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와 학생들이 따를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합니다.
- 후보자 등록, 합동 소견발표회, 투표, 개표 등 선거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가급적 선거에 필요한 각종 공고서식 및 투표용지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게 하되, 투표용지의 작성·보관 등 핵심 부분은 선거담당교사가 관여합니다.

공약중심의 선거운동 확립

- 학교에서부터 실천이 가능한 공약중심의 선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선출할 학생회 임원의 역할과 임무 등을 사전에 교육하고, 이에 적합한 공약이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 등 모든 선거운동은 공약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합니다.
- 수업시간에는 후보자의 공약내용 등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후보자 선택 기준이 공약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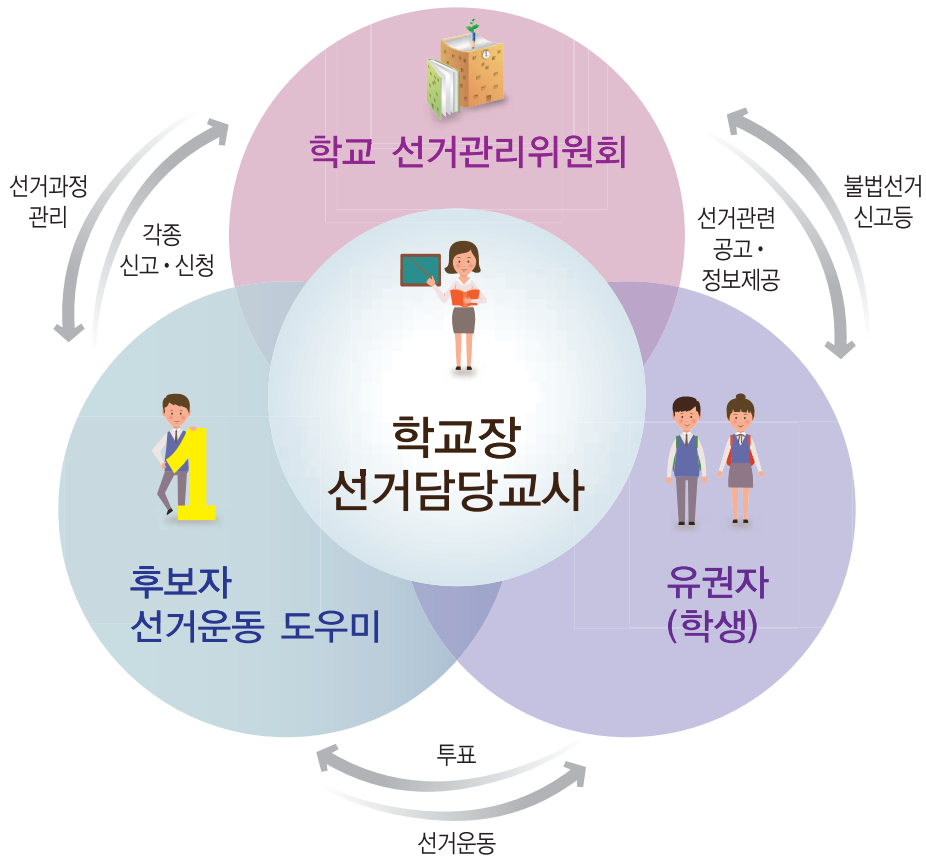
선거규정 위반자에 대한 책임 부과

- 선거규정 위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하여 주시고, 위반자에 대한 적발 등은 스스로 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 선거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거규정 위반행위 유형, 신고방법, 신고처 등도 안내합니다.
- 선거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치에 앞서 반드시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조치(경고, 등록무효, 당선무효)를 부과합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선거

- 선거규정에 있는 공고사항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공고하여 모든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합동 소견발표회, 투·개표의 일시·장소 등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교내 방송망과 조회 시간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여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든 선거과정에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투표참여의 필요성과 기권에 따른 폐해 등을 교육하여 투표참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학교선거 주체별 역할구도



※ 학교장과 선거담당교사의 역할은 학교선거가 학생 주도로 민주주의 체험의 장이 되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단원의 핵심내용

- 학교선거규정 마련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일정 관리



Ⅱ. 학교선거 전 준비사항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학교선거 매뉴얼

1 학교선거규정 마련

1. 필요성

- 공정한 선거관리와 후보자간 선거운동 등의 기회균등 보장
- 선거관리 과정이나 선거결과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학교선거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대부분의 사례가 학교선거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각 학교의 선거는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으로서 마땅히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관례와 상식을 적용한 대화를 통한 해결방법 밖에 없으므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선거규정 제정시 유의사항

- 선거절차에 따라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일정을 고려하여 선거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선거관리과정에서 선거규정에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되, 차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선거 후에 선거규정에 직접 규정합니다.
- 후보자간 기회균등이 보장되도록 선거운동기간, 시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해야 합니다.
-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처벌정도를 명확히 하고, 이의 제기 시 처리기준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후보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투표지의 유효와 무효 판정을 위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학교에서의 임원활동에 대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 학교선거 관련 이의 제기 및 물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물의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학교선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학생회 임원선거 규정

- 부록 「임원선거규정(예시)」를 참조하여 자체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란?

학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공식기관으로서 선거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기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기도 과천시)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구성방법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각 학년 학급 회장(초등의 경우 4 ~ 6학년, 중등의 경우 1 ~ 3학년) 중에서 공정한 절차(무기명 다수대표제 등)를 거쳐 7 ~ 9인을 위촉하되, 후보자가 속한 학급의 회장은 가급적 제외합니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위원 선정 후에 위원들이 모여서 선거담당교사의 지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 또는 투표를 통해 각각 1인씩 선출합니다.
- 위원공고

선거일 공고일에 위원명단을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1호 서식(P. 54)에 의거 공고합니다.
- 임기제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의 교육

- 선거관리위원의 역할과 자세를 다음과 같이 교육합니다.
 - 선거관리위원은 경기에서의 ‘심판’ 과 같은 역할이므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역할 당부
 - 짧은 기간에 학교선거가 이루어지므로 각 절차에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관리하는 자세 역설
 -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

학교선거 매뉴얼

-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임무를 교육합니다.
 - 공고 관리: 후보자 등록 · 사퇴/ 당선인/ 중요결정사항 등
 -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후보자 기호결정
 - 선거운동관리: 선거운동 도우미 접수/ 후보자 홍보포스터 부착/ 합동 소견발표회 준비 · 관리/ 선거운동규정 위반사례 적발 · 처리
 - 투표 · 개표관리: 투표용지 제작/ 투 · 개표참관인 접수/ 투 · 개표도우미 선정/ 투 · 개표소 설비/ 투 · 개표관리(투표지 유 · 무효표 판정 포함)/ 선거록 작성
 - 당선인 결정, 선거관리와 관련한 중요사안 결정 등

3. 선거관리위원회 운용

- 별도의 장소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합니다.
-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운용(선거기간 중 매일 수업 후에 회의 개최 등)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 ※ 출석위원이란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를 말하고, 과반수라 하면 반이 넘어서는 수(위원이 6명이라면 4명 이상)를 말합니다.

3 선거일정 관리

1. 선거일정 수립 시 고려할 사항

- 학교의 형편(규모, 학사일정 등)에 따라 선거일정을 조정합니다.
- 선거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학교의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참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선거일정을 조정합니다.
- 선거기간이 후보자가 자신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간인지, 반대로 선거기간이 너무 길어 선거의 과열을 초래할 수 있는 지를 감안합니다.
- 선거업무(투표자명단 작성/ 후보자 등록/ 연설회 등 선거운동관리/ 투 · 개표관리 등)를 수행하기에 지장이 없는지 고려합니다.

2. 선거일정표 작성(선거기간 5일 기준)

기준: D(선거일)

일 정	선 거 사 무	주 체	비 고
D -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학교장	선거일 공고전까지
	선거일 공고		선거일 전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 명단 공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 공고일에
D - 4일까지	투표자명단 작성	학급담당교사	선거일 공고일의
	후보자 등록신청 접수·공고	선거관리위원회	다음날까지
D - 4일 ~ D일까지	선거운동기간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부터 선거일까지
D - 3일까지	후보자 홍보포스터 제출	후보자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후보자 홍보포스터 첩부	선거관리위원회	접수 후 즉시
D - 2일까지	합동 소견발표회 개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기간 중
D - 1일까지	투표용지 작성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투·개표도우미 선정·교육		
	투·개표소 설비		
	투·개표참관인 신고	후보자	
D(선거일)	투표자명단 보완·확정	학급담당교사	선거일 당일
	투·개표관리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결정·공고		
D + 3일까지	선거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후보자	선거일 후 3일까지
D + 7일까지	선거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학교운영위원회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학업일정을 최대한 감안하여 작성한 선거일정표 예시이므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교에서는 일정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늘어나 학생들이 후보자의 공약 등을 잘 파악한 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선거 매뉴얼

3. 선거일정별 관리사항(선거기간 5일 기준)

일 정	관 리 내 용
사 전 준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확정 : 교직원회의를 거쳐 선거일 결정, 학생들에게 선거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림 • 투표방법 결정 : 종이투표 / 온라인투표 / 터치스크린투표 등 방법 결정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교육 : 학급 회장으로 구성, 선거관리위원 직무·역할 등 교육
D - 15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 공고 : 학교게시판, 교내 방송, 가정통신문, SMS 문자발송 등 안내 • 선거관리위원 공고 : 학교게시판 • 공명선거협조문 게시·발송 :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 투표자명단 작성 : 출석부로 대체하거나 출석부를 참고하여 작성
D - 4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등록 관리 : 정한 시간을 준수하여 후보자 등록 접수 후 마감 • 후보자 회의 개최 : 후보자 기호 결정, 후보자·선거운동 도우미 사전교육 • 후보자 등록 공고 :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 • 선거운동 관리 : 선거운동 도우미 접수처리, 선거운동방법 안내 및 선거운동규정 준수 여부 수시 확인
D - 3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홍보포스터 접수·첨부 : 각 후보자별로 규정매수를 접수 받아 게시판이나 복도 등 한 장소에 첨부
D - 2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 소견발표회 개최 : 발표 순서를 정하고, 정한 시간을 준수하여 관리
D - 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개표소 설비 : 기표대, 투표함 등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여 받아 설비 • 투표용지 제작 : 기호와 후보자를 잘 대조하여 작성 • 투·개표 도우미 선정·교육 : 필요한 수 만큼 선정하여 임무 교육 • 투·개표 참관인 신고 접수 : 후보자별로 신고한 자 접수 처리
D (선거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자명단 보완·확정 : 전학 관련 학생명단 정리 • 투표관리 : 투표절차 안내, 학년별로 시간을 나누어 진행 • 개표관리 :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주도로 개표를 진행하고 선거담당교사가 최종확인 • 당선인 결정·발표 : 당선인 결정, 그 결과 교내 방송 공표, 게시판 게시
D + 3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접수 : 학교장(선거담당교사)이 접수
D + 7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다언의 책임내용

- 학교선거관리절차
- 선거관리절차별 준비사항
- 학교선거 참여자 교육



Ⅲ. 학교선거관리



1 학교선거관리절차

선거일 공고

선거일을 정하고 그 일정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선거일 공고 시에는 선거관리위원의 명단도 함께 알립니다. 선거일 공고로 선거가 시작됩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은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학생의 추천장 또는 담임교사의 추천서와 함께 공약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선거운동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학생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홍보포스터, 어깨띠와 피켓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알리고, 소견 발표회를 통해 공약을 홍보합니다.

투표

투표는 선거일에 정해진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리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학생들이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여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합니다.

개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투표지를 유·무효로 선별하고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집계합니다. 개표가 완료되면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정리하여 개표결과를 공표합니다.

당선인 결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결과에 따라 최고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후, 공고하여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2 선거관리절차별 준비사항

1. 선거일 공고

가. 선거일 공고전 준비사항

- 교장은 교직원회의를 거쳐 선거일을 확정하고, 사전에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선거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선거일정은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있게 정하고, 선거일 공고 전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합니다.

- 후보자를 선거별(회장, 부회장)로 각각 등록하도록 할 것인지, 러닝메이트로 등록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 선거에서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 방법(종이투표, 온라인투표, 터치스크린투표 등)을 결정합니다.
- 교장(선거담당교사가 직무 대행)은 선거일 공고 전까지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을 각 학년 학급 회장(초등의 경우 4 ~ 6학년, 중등의 경우 1 ~ 3학년) 중에서 공정한 절차(무기명 다수대표제 등)를 거쳐 7 ~ 9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고 직무·역할 등을 교육합니다.
- 구·시·군 단위의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협의하여 원활하게 선거를 관리합니다.

나. 선거일 공고사항

- 선거담당교사가 학생회 임원선거 일정과 입후보 자격 요건, 후보자 등록시 제출 서류 등을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2호 서식(P. 55)에 의거 공고합니다.
- 초등학교의 경우, 선거권자의 범위한정 시에 4학년 이상 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학교게시판에 위원명단과 함께 공고하고, 선거일정을 가정통신문·SMS 문자 발송·교내방송, 학교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합니다.



「공명선거 협조문」(P. 40)을 함께 게시하고, 그 내용을 가정통신문에 포함시켜 발송하여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학교선거 매뉴얼

다. 투표자명단 작성

- 학급담임교사가 선거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3호 서식(P. 56)에 따라 학급 명렬표(출석부)에 의거하여 전출, 유예, 면제 등으로 변동된 학적을 정리하고 투표할 투표자명단을 작성(간편하게 학급 명렬표 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투표자명단은 선거일 당일에 학급담임교사가 전학 등으로 변동된 사항을 정리하여 확정하고, 투표 시 사용합니다.

2. 후보자등록신청

가. 입후보자격

- 2학기 중에 선거를 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회장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2학년 재학생으로 부회장은 2학년과 1학년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초등학교는 상반기에 선거를 하되, 회장은 6학년, 부회장은 6학년과 5학년으로 합니다.
- 성적을 기준으로 한 입후보 자격 제한은 학생의 인권을 제약할 수 있으니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후보자는 학교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사실이 없는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중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징계여부를 생활부장 교사에게 확인받도록 합니다.
- 후보자 추천요건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5호 서식(P. 59)에 의거 재학생 30명 이상의 추천이나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6호 서식(P. 61)에 의거 학급담임교사의 추천을 받도록 합니다.

나. 후보자등록

-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 방과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도록 합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4호 서식(P. 58)에 의거 후보자등록신청서(첨부자료 : 추천장이나 추천서, 공약서)를 제출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마감 후에 후보자 등록상황을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7호 서식(P. 62)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후보자등록 마감 후 임원선거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임원선거규정(예시)」에 따라 그 선거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거나 찬반 투표를 하여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다. 후보자회의 개최

- 후보자회의는 선거담당교사가 후보자등록 마감 후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 선거관리위원을 대상으로 개최합니다.
- 후보자회의 시에는 추첨으로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의 역할 및 선거절차와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합니다.



후보자 교실(P. 37)과 선거운동 도우미 교실(P. 39)을 참조하여 교육합니다.

라. 후보자 등록 무효와 사퇴

- 입후보 자격이 없는 후보자가 등록했거나 후보자 측의 선거규정 위반행위가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무효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 후보자 사퇴 시에는 반드시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8호 서식(P. 63)의 사퇴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무효 결정이 있을 때나 후보자 사퇴 시에는 반드시 「임원 선거규정(예시)」 붙임 제9호 서식(P. 64)에 의거 공고하여 학생들에게 알립니다.

3.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 학교선거와 관련한 대부분의 물의사태가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정위반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교육과 선거운동기간 중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선거운동기간 · 시간, 선거운동장소, 선거운동방법,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서 사전 안내하고, 위반 시에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학교선거 매뉴얼

- 선거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기성 공약, 인신공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니페스토 공약을 중심으로 선거운동(P. 24, 매니페스토로 치르는 학교선거 참조)을 하도록 지도합니다.
- 학교선거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선거운동은 낮 시간으로 제한하고, 장소도 학교로 한정하며, 방법도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합니다.

학교선거 물의사례 모음

- 학교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하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자 측 선거운동 도우미가 학교 앞 횡단 보도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례를 근거로 낙선한 후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함.
- 합동 소견발표회에서 자신이 당선이 되면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물을 사주겠다고 원고에 없는 발언을 한 후보자가 당선되어 낙선한 후보자의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장소에서 후보자와 상관없는 학생이 학생 몇몇에게 'A후보자를 찍어라'며 선거운동을 하였고, A후보가 당선됨. 이에 10표 차이로 낙선한 B후보자 측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이유로 재선거를 요구함.
- 당선자 학생이 선거 전에 학생 몇 명에게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산 것이 선거종료 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어 문제가 됨.

☞ 선거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리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되, 선거운동시간, 대상인원, 득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 당선자와 낙선자간의 표 차이를 감안하여 선거결과가 바뀔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나. 선거운동 도우미의 선거운동

-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별로 선거권이 있는 학생 중에서 10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정하고, 필요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거운동 도우미의 수는 선거운동 활성화와 선거과열 등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로 결정합니다.

- 선거운동도우미 선임과 교체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10호 서식(P.65)에 의거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다. 후보자 홍보포스터 제작·첩부

-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다음과 같이 후보자당 4매 이내를 제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 규격 : 4절(38 x 53Cm) 정도
 - 내용 : 기호, 성명, 사진, 공약사항(타 후보자 비방이나 헛 공약 금지) 등 각 후보자의 공약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것



후보자 홍보 포스터는 규격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각각 달리하여 제작하여도 무방하며, 학교에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위해 정해진 금액(30,000원 정도)을 지원하여 포스터를 제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접수 즉시 게시판, 복도 등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모든 후보자의 포스터를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이도록 합니다.

라. 어깨띠·피켓 등 활용 선거운동

-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자유로이 어깨띠·피켓 등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정해진 시간(아침조회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타 학생수준에서 자체 제작이 가능한 용품을 자유롭게 제작·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 임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행사에 후보자 홍보포스터와 연설문 등을 제작 의뢰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니, 후보자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게 스스로 제작하도록 교육합니다.

마. 합동 소견발표회 개최

- 가급적 선거일 전 2일(불가피한 경우 투표 전에 실시 가능)까지는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투표일 당일 합동 소견발표회를 하고 투표를 실시하는 학교가 많으나 가급적 선거일 전에 합동 소견발표회를 개최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와 개표만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학교선거 매뉴얼

- 합동 소견발표회는 모든 학생이 청취가 가능하도록 대강당이나 교내 방송망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동 소견발표 시간은 후보자당 5분 ~ 10분 이내에서 균등하게 기회를 부여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하거나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기호 순으로 하도록 합니다.



토론역량이 갖추어진 학교에서는 합동 소견발표회를 대신하여 후보자간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담당교사와 함께 합동 소견발표회 전까지 장소를 설비합니다.

[장소 설비에 따른 준비물]

추첨도구(발표순서 선정시 사용), 마이크 2, 연설패, 후보자 대기용 의자, 후보자용 표찰, 시간 측정용 시계

- 선거관리위원회는 진행 순서를 준수하여 합동 소견발표회를 관리합니다.
 - 발표순위 추첨(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주관)
 - ※ 후보자가 모두 동의하면 추첨 없이 기호 순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개회 선언(부위원장 사회, 지금부터 회장선거 합동 소견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선거관리위원장 인사(소견발표회에 대한 당부사항, 투표참여 호소 등)
 - 진행요령 설명(발표순서, 발표시간, 발표방법 등 설명)
 - 후보자 연설(발표순으로 정해진 시간 준수, 상대후보 비방 금지 준수)
 - 연설회 종료(이후 선거일정 안내, 올바른 투표참여 당부)



개인 소견발표회는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다만 방법상 제한을 두어 선거 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신상과 공약을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바.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통제가 어렵고, 주소 수집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학교홈페이지에 선거운동방을 만들어 주고 실명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상 주의가 요망됩니다.

사. 기타 선거운동

- 기타 후보자 홍보용 소형인쇄물 배부, 교실순회 합동연설회,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선거운동방법은 각 학교별로 선거분위기와 학생자치 역량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선거 매뉴얼



'매니페스토'로 치르는 학교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른들도 실천은 어렵습니다. 학교선거에서부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선택함으로써 공약중심의 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니페스토 선거의 의미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당선되면 실천하겠다고 문서로 제시하는 공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국가 또는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개발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즉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공약 간의 추진 우선순위, 자원조달 가능성을 명시하여 제시하고, 유권자는 모든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임기 중에 그 공약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하고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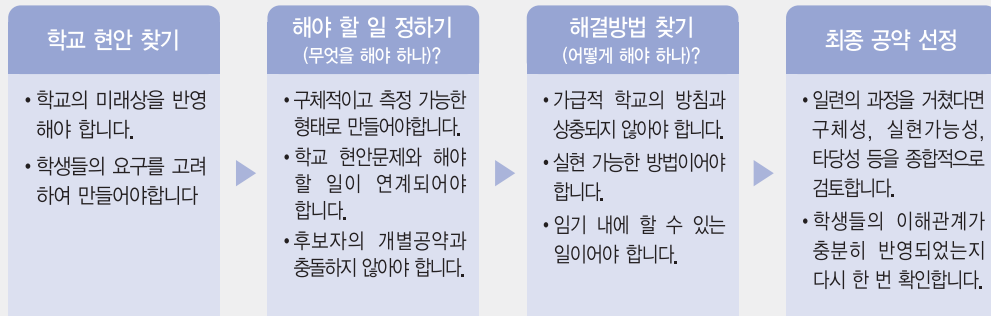
2. 학교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선거'

가. 후보자 교육

후보자 등록시 각 후보자들에게 공약서를 제출하게 하시고, 미래의 지도자가 될 후보자들이 학교에서부터 바른 선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약 만들기

공약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추상적인 공약과 구체화되고 이행확인이 가능한 실천적 공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실천적 공약이 바로 매니페스토 공약입니다. 이 공약에는 후보자의 실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Manifesto 는 라틴어로 손(manus)과 치다(fendere)가 합성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이는 책임 있게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할 때의 서약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따라서 어원에는 『책임 있는 약속, 계약』, 『구체적으로 약속하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 매니페스토는 1834년 영국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 구제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② 후보자 공약 자가 진단표

각 후보자들이 자가 진단표를 이용하여 자신의 공약을 진단해 보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후보자용 공약 자가 진단표 |

요건	지표	내용	점수					기타
			①	②	③	④	⑤	
형식 요건	구체성	공약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측정가능성	제시된 공약의 목표가 측정가능한가?						
	소망성	공약이 후보자의 비전을 담아내고 있는가?						
내용 요건	포괄성	공약이 학생들의 바람을 반영하고 있는가?						
	독창성	공약이 학교의 핵심현안을 반영하고 있는가?						
	실행가능성	공약이 실현가능한가?						
	시의적절성	공약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수단 요건	경제성	공약의 해결방안이 다른 방법보다 경제적인가?						
개인 요건	후보자의 포용성	후보자가 공약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적으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나. 유권자 교육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에게 바른 후보자 선택기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치문화인 '지역주의'는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와 언론이 지역주의 정치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지만, 지역주의 투표성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매니페스토 선거를 우리 학생들이 실천하여 앞으로 후보자 선택이 올바르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① 유권자 교실 운영

바른 투표행태 학습을 위해 선거개시 전 유권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에 임하는 자세 등을 가르쳐 주시고, 유권자용 공약 진단표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학교선거 매뉴얼

| 유권자용 공약진단표 |

내 용	점 수					기 타
	①	②	③	④	⑤	
후보자의 공약이 구체적인가?						
후보자의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후보자의 공약이 학교, 학생에게 유익한가?						
추진이 임기내에 가능한가?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적으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공약은행 운영

선거기간 개시 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학교 의견 개선함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공약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공약은행을 통해 들어온 의견을 각 후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③ 후보자간 토론회 개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대개 후보자 홍보용 포스터와 후보자연설회를 통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정보를 얻습니다. 후보자간 토론회는 공약을 비교적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학교선거문화 점검

학생용 우리 학교선거문화 점검표를 이용하여 선거과정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등을 학생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학생용 우리 학교선거문화 점검표 |

내 용	점 수					기 타
	①	②	③	④	⑤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는가?						
선거 전 과정(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관리 등)이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관리되었는가?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이 살펴보고 대표자를 선출하였는가?						
후보자들이 선거 전·후에 금품(떡볶이, 햄버거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깨끗한 선거였는가?						
우리 학교선거규정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적으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 중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거과정을 보면 후보자는 조직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치는 반면 유권자는 비조직적, 피동적, 소극적으로 투표에 임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주로 후보자가 선거에서 중심이 되어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대표자를 뽑는 행위' 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표권을 지닌 유권자가 선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4. 투 표

가. 투표자명단 보완

- 학급담임교사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유예, 면제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유예, 면제,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합니다.
- 선거일에 결석·조퇴·지각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포함시키고,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14호 서식(P. 69)의 선거록 투표상황에 기권자수로 처리합니다.

나. 투표 도우미 및 투표참관인 선정

- 투표사무를 담당할 투표 도우미는 각 학년별 선거관리위원으로 원활한 투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학생 중에서 필요한 만큼 선정합니다.
- 투표관리를 감시할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별로 학생 중에서 3인씩(각 학년별 1인씩)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12호 서식(P. 67)에 의거 신고하도록 합니다.
※ 선거운동 도우미를 투표참관인으로 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 투표용지 작성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전일까지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11호 서식(P. 66)을 참조하여 투표용지원고를 작성합니다.
※ 후보자가 선거별(회장, 부회장)로 각각 등록하였는지, 러닝메이트로 등록하였는지에 따라 투표용지원고를 작성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담당교사의 도움을 받아 투표대상자 수에 1% 정도를 더한 매수만큼 투표용지를 만듭니다.
※ 온라인투표나 터치스크린투표의 경우에는 별도로 투표용지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 동시에 두개 이상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경우에는 선거별로 투표용지의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는 것이 개표하기에 좋습니다.
- 제작된 투표용지는 선거담당교사가 캐비닛 등에 보관하여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학교선거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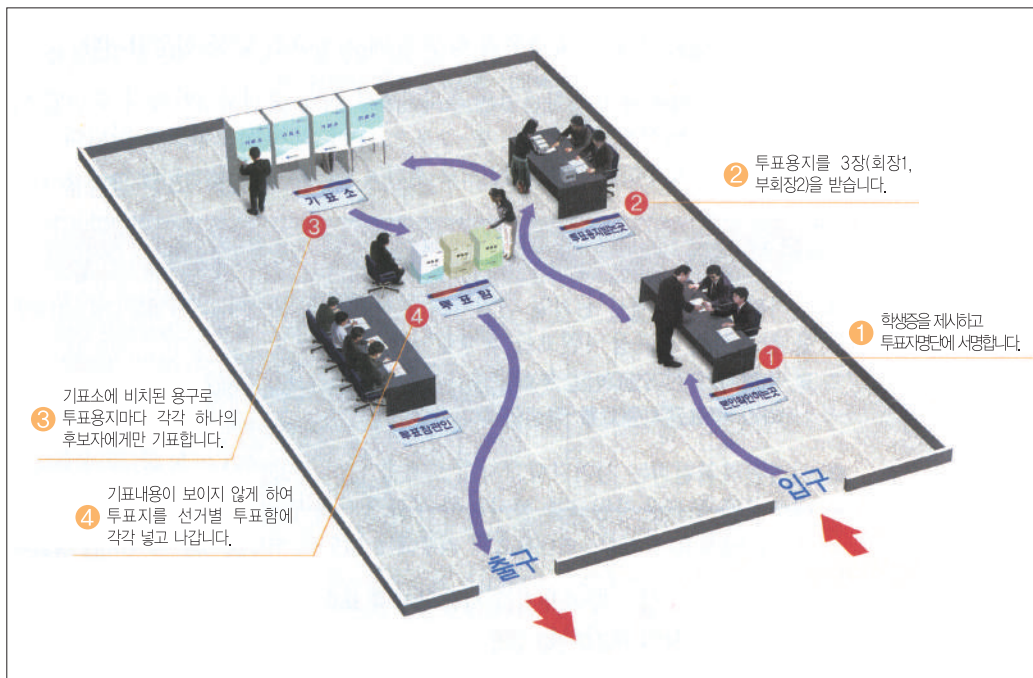
라. 투표소 설비


- 선거담당교사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방법에 적합한 선거용구·용품(기표대, 투표함, 기표용구 등)을 대여합니다.

 온라인투표 (P. 30, 온라인투표로 치르는 학교선거 참조)와 터치스크린투표 (P. 31, 터치스크린 투표기로 치르는 학교선거 참조)의 경우, 사전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14호 서식(P. 69)의 선거록을 준비합니다.
-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담당교사와 협의하여 투표에 적당한 장소(대강당, 체육관, 다용도실, 복도 등 실내장소)를 선정하고 아래 투표절차도를 참조하여 투표소를 설비합니다.

마. 투표절차도



 위 예시도는 3장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경우로서 온라인투표와 터치스크린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절차도가 달라집니다.

바. 투표 과정

● 투표 개시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교내 방송을 통해 투표개시를 선언(지금부터 학생회장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합니다.

● 투표 진행

-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해 투표관리인(위원, 투표도우미)의 업무를 분장합니다.
-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 시 유의사항」(P. 41)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투표하기 전에 간단히 투표절차와 방법 및 무효표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 학업일정을 고려하여 학년·반별로 투표시간을 지정·운용하고, 부득이 지정 시간에 투표하지 못한 학생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투표하도록 합니다.

※ 본인 확인 및 명부 서명(2인)/ 투표용지 교부(2인)/ 투표함(1인)/ 기표소 안내(1인)

- 투표참관인은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학년별로 교대로 참관하도록 하며,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으로 하여금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합니다.



평일에 학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 학년별로 투표를 진행하고, 그 시간에는 해당 학년의 투표관리인과 투표참관인이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를 마감하고, 투표자수를 파악하여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14호 서식(P. 69) 선거록의 투표상황을 기재한 후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깁니다.

학교선거 매뉴얼



'온라인투표' 로 치르는 학교선거

1. 온라인투표란?

생활주변 선거(초·중·고 운영위원 및 학생회임원 선거 등)에서 해당 기관·단체가 PC, 휴대폰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투·개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이용절차

이용기관 관리자 투표 진행 절차



선거인 투표 진행 절차 (PC웹 및 모바일 웹)



3. 투표방법 및 지원대상

온라인 투표 참여 방법



온라인 투표 방법



온라인 투표서비스 대상 (각종 선거 및 의사결정 관련 투표)

- 법령에 근거해 위탁이 가능한 단체
공공주택 대표자 선거(300가구 이상 직립선거 가능)
농협조합중앙회, 수협조합중앙회, 축협산림조합
정비사업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중앙회
- 초·중·고등학교(미래유권자)
- 개별 법령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단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voting.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터치스크린 투표기’ 로 치르는 학교선거

1. 터치스크린 투표란 ?

투표기에 투표권 카드를 넣으면 표출되는 후보자 화면을 보고 원하는 후보자의 ‘기호·성명·기표란’을 손으로 눌러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 기기의 특성상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터치스크린 투표절차



※ 학생 수 1,000명 기준으로 투표시간은 2시간 정도, 개표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 터치스크린 투표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치스크린 투표기에 후보자와 투표자명단 입력 등을 위해 10일 정도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각종 선거관리 등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개 표

가. 개표 도우미 및 개표참관인 선정

- 개표사무를 담당할 개표 도우미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원활한 개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학생 중에서 필요한 만큼 선정합니다.
※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서로 다르므로 투표 도우미를 개표 도우미로 함께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개표관리를 감시할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별로 학생 중에서 2인씩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12호 서식(P. 67)에 의거 신고할 수 있고, 선거운동 도우미나 투표 참관인을 개표참관인으로 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나. 개표장소 설비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선거일 전일(불가피한 경우 투표 종료 전)까지 학교 내 강당이나 체육관, 다용도 교실, 기타 장소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여 개표소를 설비합니다.



개표장은 투표장소가 넓은 경우 투표소 옆에 설치해도 무방하며, 온라인투표나 터치스크린 투표의 경우에는 컴퓨터 설비만 하면 되므로 넓은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 선거담당교사는 개표장 설비용품(책상, 의자 등)을 확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표결과 집계표를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13호 서식(P. 68)에 의거 준비합니다.
- 개표장 설비 예시도



위 설비도는 투표지 개표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온라인투표와 터치스크린투표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컴퓨터만 설비(기존 설비된 컴퓨터 활용 가능)합니다.

다. 개표 진행

● 개표개시

- 개표장에는 선거관리위원, 개표 도우미, 개표참관인, 선거담당교사가 입회합니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하기 전에 개표장에서 직접 개표개시를 선언(지금부터 학생회장선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합니다.

● 개표진행

- 학년이나 반별로 투표함을 달리하여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지 분류부를 학년별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개표관리인(선거관리위원, 개표도우미)이 회장선거 투표함부터 학년별로 개표합니다.
 - ※ 한 장소에서 학년이나 반 구분 없이 투표를 한 경우에는 투표함별로 구분하여 개표하면 됩니다.
 - 투표지 분류부에서 선거별로 투표지를 펴서 무효와 유효로 구분하는데, 유효 투표지의 경우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 ※ 선거별로 구분 없이 1개의 투표함을 사용한 경우에는 먼저 투표지를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 투표지로 각각 분류하여 정리합니다.
 - 투표지 집계부에서는 무효표와 후보자별로 투표지가 잘 분류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한 후에 투표지를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개표과정에 문제(유효와 무효표 판정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에는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 처리합니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13호 서식(P. 68)을 참조하여 개표 결과(투표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를 정리한 후 선거별로 발표합니다.
 -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선거규정(예시)」 붙임 제14호 서식(P. 69)의 선거록을 작성하여 개표장에서 선거담당교사에게 보고합니다.

라. 투표지의 유효와 무효 판정기준의 정확한 적용

● 원 칙

- 투표지의 유효와 무효를 판가름 하는 중요한 기준은 우선 투표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이런 마음으로 투표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하여 결정합니다.

학교선거 매뉴얼

- 투표지의 유효와 무효 판가름 시 두 후보자간 경계선에 기표된 것은 육안으로 확인하여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만 유효로 처리하고, 경계선에 걸쳐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투표는 비밀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투표지에 투표자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유효 판정기준

- 한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 후보자의 구분 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무효 판정기준

-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 예 시 |

유효 투표

기호	성명	기표란
1	박윤유	ⓐ
2	안정최	
3	장신오	
4	최한양	
5	김홍곽	

공명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무효 투표

기호	성명	기표란
1	박윤유	
2	안정최	ⓐ
3	장신오	ⓐ
4	최한양	
5	김홍곽	

공명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유효 투표

학생회 회장선거투표

기호	성명	기표란
1	박윤유	⊗
2	안정최	
3	장신오	
4	최한양	
5	김홍곽	

공명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무효 투표

학생회 회장선거투표

기호	성명	기표란
1	박윤유	⊗
2	안정최	
3	장신오	
4	최한양	
5	김홍곽	

공명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회장선거투표

기호	성명	기표란
1	박윤유	
2	안정최	⊗⊗⊗
3	장신오	
4	최한양	
5	김홍곽	

공명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회장선거투표

기호	성명	기표란
1	박윤유	
2	안정최	
3	장신오	좋다
4	최한양	
5	김홍곽	

공명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회장선거투표

기호	성명	기표란
1	박윤유	
⊗	안정최	⊗
3	장신오	
4	최한양	
5	김홍곽	

공명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회장선거투표

기호	성명	기표란
1	박윤유	✓
2	안정최	
3	장신오	
4	최한양	
5	김홍곽	

공명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6. 당선인 결정

가. 결정방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다시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기에는 많은 자원이 소요되므로 학급 회장 등 일정한 그룹(대의원)만을 대상으로 간접 선거하도록 규정합니다.

- 회장과 같은 학년의 부회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에서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장이 교내 방송 등을 통해 당선자를 발표(이번 회장선거에서 ○○○가, 부회장선거에서는 ○○○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합니다.

나.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명단을 학생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학교게시판 등에 「임원 선거규정(예시)」 붙임 제15호 서식(P. 71)에 의거 공고합니다.

학교선거 물의사례 모음

- 교칙으로 인터넷투표를 통해서 학생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해 놓은 학교에서 전학 온 학생과 비밀 번호를 분실한 학생 등 일부에게 수기투표를 허용함. 그 결과, 인터넷투표에서는 A학생이 2표차로 이겼으나, 인터넷투표와 수기투표를 합산한 결과 B학생이 5표차로 승리함. 학교에서는 교칙을 근거로 A학생을 당선자로 선정함. 이에 B후보 측에서 당선인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함.
- ☞ 임원선거규정(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리기준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임원선거규정(교칙)을 개정하여 인터넷투표 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거규정에 없을 경우에는 선거 전에 투표방법을 결정할 때에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하여 공고합니다.
- 개표결과 1표차로 회장(후보자 A)과 부회장(후보자 B)이 결정된 후 위원 등이 모두 해산함. 이후 1표차로 진 후보자 B와 B의 담임교사가 선거담당교사에게 재검표를 요구하여, 양측 후보자 2인(A, B)과 B의 담임교사, 선거담당교사가 재검표한 결과 후보자 B가 3표차로 앞서 회장을 B로 재결정함. 결정이 반복된 것을 안 후보자 A의 학부모가 개표 과정상의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
- ☞ 임원선거규정(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원선거규정의 절차에 따라 당선인 결정권을 가진 자가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선거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권자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학교선거 참여자 교육

1. 후보자교실

후보자란?

학교를 대표하는 회장 등의 직위를 얻고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학생을 말합니다.

가. 후보자의 마음가짐 교육

- 학생의 대표로서 맡겨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도록 주지시킵니다.
- 학교 전체 학생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 따뜻한 인성,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 협조를 이끌어 내는 설득력 등 대표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교육합니다.
-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 노력을 나누려는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필요함을 인식시킵니다.



학교 임원은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은 직책이므로 진학 시 가산점 등 이점만 생각하고 출마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합니다.

나. 후보자 준비사항 교육

1) 선거관련 사항 안내

- 선거일정과 선거운동관련 준비물을 알려줍니다.
 - 선거일정 안내
 - 선거운동 용품(후보자 홍보포스터, 홍보피켓·어깨띠 등) 준비 사항



티셔츠 등을 따로 구매하는 것은 지양하고 손수 제작한 소품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학생 신분으로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값비싼 용품을 사용하여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합니다.

- 선거운동 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당선을 위한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것, 지키지 못할 헛 공약 남발, 상대 후보자 비방 금지
 - 선거운동 시간·장소제한 등 각종 제한규정 준수 당부
- 선거운동 시 연설 잘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학교선거 매뉴얼

선거연설 잘하는 방법

- ① 서두를 힘차게 시작한다.
자기만의 슬로건이나 유머러스한 인용구로 청중의 주의를 사로잡는다.
- ② 일화, 실례, 증거를 많이 사용한다.
청중에게 직접 연관이 되고 연설의 흐름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 ③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한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단어, 짧은 문장, 반복, 질문 등을 사용한다.
- ④ 시각적으로 묘사한다.
시각적으로 묘사하면 청중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똑같은 메시지라도 훨씬 강한 인상을 준다.
- ⑤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말한다.
연설자가 여유가 있고 편안해 보이면 듣는 사람들도 부담이 없다.
- ⑥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자극하는 사람보다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 ⑦ 활기차게 말한다.
연설자는 청중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다. 얼굴에 생기를 띠고 말하라.
- ⑧ 진지하게 말한다.
연설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진실된 노력을 보여준다.
- ⑨ 자신 있게 말한다.
자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확신 없이 말하는 것처럼 청중을 실망시키는 것은 없다.
- ⑩ 청중에게 골고루 시선을 준다.
허공이나 원고에 시선을 고정시키거나 한쪽만 쳐다보지 말고 청중 한사람, 한사람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낸다면 청중은 친근감을 느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선남선녀 > 선거아카데미 > 선거특강」에서 선거연설법에 관한 동영상으로 전문 강사의 선거연설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2) 공약 만들기 교육

- 공약마련 시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교생활을 제공하고, 학교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공약
 -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이나 자신의 힘으로 친구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공약
- ※ 매니페스토로 치르는 학교선거(P. 24)를 참조하여 교육합니다.

- 후보자의 공약사항이 실현 가능한지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정하도록 권유합니다.
- 공약은 후보자 홍보포스터에 게재하거나 합동·개인 소견발표회 시 연설내용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2. 선거운동 도우미와 유권자 교실

• 선거운동 도우미란?

후보자를 도와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공약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학생을 말합니다.

• 유권자란?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학생을 말합니다.

가. 선거운동 도우미의 마음가짐 교육

-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리고, 다른 후보자보다 호감을 가질 수 있게 열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지도합니다.
-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운동 시간·장소 제한 등의 규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합니다.
- 선거운동 도우미의 잘못된 행동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주지 시킵니다.

나. 유권자의 마음가짐 교육

- 학생들이 학교선거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대신할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 투표참여는 하나의 권리이지만, 학교 구성원으로서 꼭 참여해야 하는 '의무'라는 점도 잊지 않도록 주지시킵니다.
- 후보자 선택 시 개인적인 친분이나 외모가 아닌 후보자 공약에 중점을 두어 선택하도록 교육합니다.
※ 매니페스토로 치르는 학교선거(P. 24)를 참조하여 교육합니다.
-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든지 학교대표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험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게시문 제1호]

공명선거 협조문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선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후보자는 규정에 위반된 선거운동을 하여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 여러분은 규정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기 준]

1. 경 고

- 후보자간 다툼
-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

2. 후보자 등록무효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3. 당선무효

-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게시문 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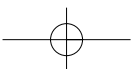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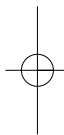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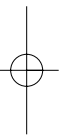
투표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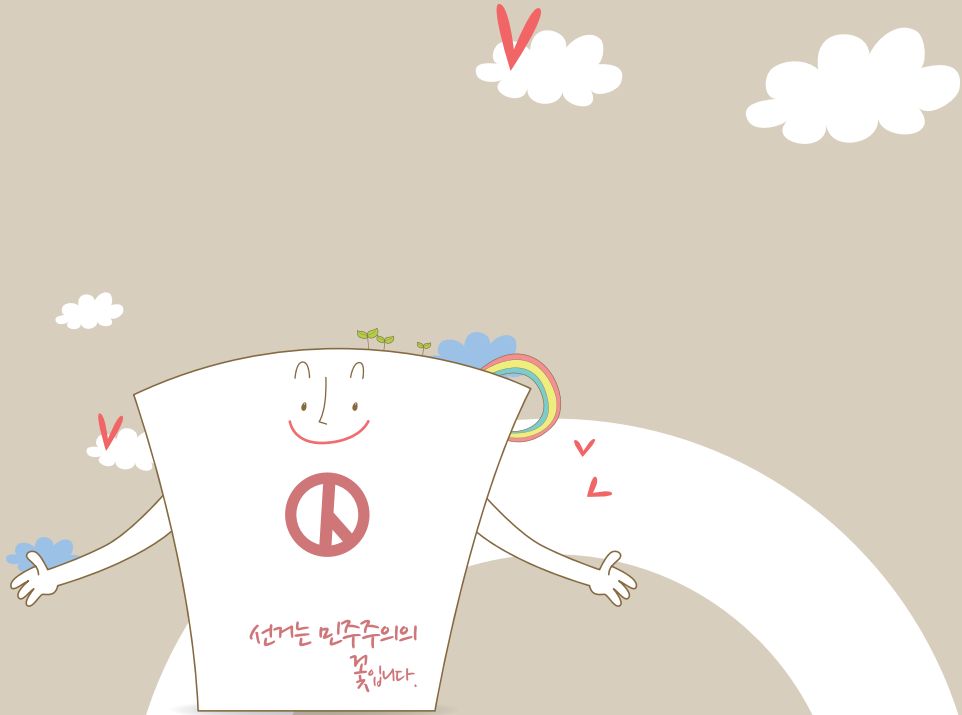
투표 시에는 소중한 우리의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무효표가 됩니다.

[무효표 판정 기준]

1.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정규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투표용지가 찢어져 정규투표용지임을 알 수 없는 경우
3. 서로 다른 후보자의 기호란 또는 기표란 등에 2개 이상을 기표한 경우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하여 어느 후보자 쪽에 치우쳤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5. 정상적으로 기표를 했더라도 투표용지에 '좋다' 혹은 '홍길동' 등의 문자를 기입 하거나 V, △, ☆ 등의 기호를 기입하는 경우
6. 정해진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경우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부 록

1. 초·중등학교 학생회 임원선거규정(예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안내
3.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안내

초·중등학교 학생회 임원선거규정(예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이 규정은 학생회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4학년 ~ 6학년(중등의 경우 1학년 ~ 3학년) 각반 회장 중에서 학생회 대의원회의 무기명 다수대표제로 7 ~ 9인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나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 명단을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붙임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⑧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4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직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 이상 (중등의 경우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6조 (투표자명단 작성)

- ① 학급담임교사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붙임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급담임교사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제7조 (후보자 자격)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회장의 경우 6학년에(중등의 경우 3학년 또는 2학년), 부회장의 경우 각각 6학년과 5학년(중등의 경우 각각 2학년과 1학년)에 다녀야 한다.

(※ 중등의 경우 입후보자격의 제한을 학교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 교칙위반으로 현재 ‘특별교육이수’ 또는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처벌중이거나 처벌을 받고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등)

제8조 (후보자 등록)

- ①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매일 오후 5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학교선거 매뉴얼

1. 후보자 등록신청서(붙임 제4호 서식) 1부
 2. 추천장(붙임 제5호 서식) 또는 추천서(붙임 제6호 서식) 1부
 3. 공약서 1부
- ② 회장, 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추천을 받거나 담임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장의 경우, 선거권 자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거권자의 10% 이상 20%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붙임 제7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9조 (공약심사제도)

-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시에 제출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한 후,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공약변경을 권유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공약변경 권유 시 후보자는 해당공약을 적절히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권유에 이의가 있을 시 후보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이의신청이 제기 된 경우,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공약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사하고, 후보자 등록일의 다음 날까지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 사항을 당해 후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 (등록무효와 사퇴)

-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붙임 제8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붙임 제9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조 (선거운동)

- ① 선거운동기간은 자기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은 학교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학교 밖에서도 할 수 있다.
(※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으나 비방·허위사실 등의 유포가 용이한 단점이 있으므로 허용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합니다.)
-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붙임 제10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제2조 (후보자 홍보포스터)

-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4매(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3조 (소견발표회)

-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 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 마다 10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학교선거 매뉴얼

-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 ⑤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 도우미 중에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발표회에서 지원연설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어깨띠 · 피켓 등)

-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 · 성명 · 사진 · 공약사항 · 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 · 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장점이 있으나 비방 · 허위사실 등의 유포가 용이한 단점이 있으므로 허용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합니다.)

제16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사유의 행위
 - 가. 후보자간 다툼
 - 나.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17조 (선거비용)

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회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18조 (투표)

-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붙임 제11호 서식)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 ⑥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2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 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제19조 (개표)

-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2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붙임 제13호 서식)를 발표하고 선거록(붙임 제14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20조 (당선인 결정)

-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에서 득표 순으로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 2인을 각각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당해 학년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회장과 같은 학년의 부회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 후보자 중에서 차점자를 회장과 같은 학년의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④ 개표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학생회 회의에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 일시는 학교장이 교직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에서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담당교사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고(붙임 제15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21조 (재선거)

-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 ② 재선거는 학교장이 교직원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2조 (보궐선거)

- ① 회장과 선임학년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없을 경우 선임학년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보궐선거는 학교장이 교직원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23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신청(붙임 제1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일이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선거담당교사에게 이의신청(붙임 제1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담당교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5시간 이내에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24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 16조 제1항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5조 (보칙)

-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선거담당 교사에게 인계하고, 선거담당 교사는 이를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 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③ 이 규정은 학생회의 의결과 교직원회의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붙임서식 목록



1. 위원공고
2. 선거일공고
3. 투표자명단
4. 후보자등록신청서
5. 추천장
6. 추천서
7. 후보자등록공고
8. 후보자 사퇴신고서
9. 후보자 (등록무효) · (사퇴) 공고
10.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서
11. 투표용지(예시)
12. 투표와 개표참관인 신고서
13. 개표결과
14. 선거록
15. 당선자공고
16. 이의신청서

학교선거 매뉴얼

[붙임 제1호 서식]

위 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명 단]

구 분	학 년 · 반	성 명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붙임 제2호 서식]

선 거 일 공 고

년도 학생회 임원선거의 일정과 입후보자격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인)

1. 선거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후 보 자 등 록		
선 거 운 동 기 간		
합 동 소 견 발 표 회		
투 표 일		
개 표 일		

2.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나. 추천장 또는 추천서 1부.
- 나. 공약서 1부.

3. 입후보 자격요건

- 가. 년 월 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학년에,
부회장은 ○학년 또는 ○학년에 재학중인 자
- 나. 선거권자 20명이상 30명이내의 추천을 받은 학생
- 다. 교직원만으로 현재 ‘특별교육이수’ 또는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처벌중
이거나 처벌을 받고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 등(중등의 경우)

학교선거 매뉴얼

[붙임 제3호 서식]

투 표 자 명 단

학년 반

번호	성명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번호	성명	서명	비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작성 연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담임 (서명)

※ 투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제5호 서식]

추천장

■ 추천 후보자


· 성 명 :

· 학년 · 반 : 학년 반

위의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회 (회장)·
(부회장)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1부.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학교선거 매뉴얼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일련번호	학년 · 반	성명	서명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10	학년 반		
11	학년 반		
12	학년 반		
13	학년 반		
14	학년 반		
15	학년 반		
16	학년 반		
17	학년 반		
18	학년 반		
19	학년 반		
20	학년 반		
21	학년 반		
22	학년 반		
23	학년 반		
24	학년 반		
25	학년 반		
26	학년 반		
27	학년 반		
28	학년 반		
29	학년 반		
30	학년 반		

[붙임 제7호 서식]

후보자 등록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회 임원선거의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임원선거 후보자 명단

회 장 후 보 자				부 회 장 후 보 자							
				학년				학년			
기호	학년·반	성별	성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명
1	학년 반			1	학년 반			1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학교선거 매뉴얼

[붙임 제9호 서식]

후보자 (등록무효)·(사퇴)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아래와 같이 (등록무효)·(사퇴)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등록무효)·(사퇴) 후보자 명단

구 분	기 호	후보자성명	(등록무효)· (사퇴) 연월일	(등록무효)· (사퇴) 이유

※ 작성요령 : 구분란에는 “등록무효” “사퇴”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학교선거 매뉴얼

[붙임 제11호 서식]

투 표 용 지 (예시)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투표

기 호	성 명	기 표 란
1		
2		
3		
4		
5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 회장과 부회장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는 색상을 달리하여 각각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제12호 서식]

투표와 개표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투표와 개표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투표참관인 명단

학 년 · 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학년 반		

2. 개표참관인 명단

학 년 · 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서명)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학교선거 매뉴얼

[붙임 제13호 서식]

학생회(회장)·(부회장)선거 개 표 결 과

선거인수 (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라)	기권수 (마)	투표율 (%) (나/가)
		1	2	3	4	5			

검 열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부위원장	위원장

※ 회장과 부회장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집계표를 따로 준비하여 집계합니다.

선거담당교사	교 감	교 장

[붙임 제14호 서식]

학생회 임원선거 선거 기록

1. 투·개표 장소

가. 투표장소 :
나. 개표장소 :

2. 투·개표 일시

가. 투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3. 투표상황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 분	회 장 선 거			부 회 장 선 거					
				학년		학년			
선거인수	인			인		인			
투표자수	인			인		인			
기권자수	인			인		인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호	후보자 성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 성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 성명	득표수
	1		표	1		표	1		표
	2		표	2		표	2		표
	3		표	3		표	3		표
	4		표	4		표	4		표
	5		표	5		표	5		표
무 투 표 수	표			표		표			

4. 당선자 명단

회 장			부 회 장		
기호	후보자성명	학년·반	기호	후보자성명	학년·반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제15호 서식]

당 선 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한 학생회 (회장)·(부회장)

선거의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당 선 자 명 단]

회 장		부 회 장	
학년·반명	성 명	학년·반명	성 명
		학년 반	
		학년 반	

[붙임 제16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학년 · 반	이 름
신 청 자		
이의신청건		
세 부 설 명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성명 _____(서명)

○○학교장 귀하



선거·정치의 모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있습니다.

NEC-TV 인터넷방송 선거관련 각종 동영상

※ 중앙선관위 홍보영상, 미래유권자 선거관련 교육영상, 생활속 선거법 실천하기, 유권자와 함께하는 선거시리즈,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안내영상 등

- 선남선녀** 학교선거핵심정리, 학교선거교실, 통통이미지, 생생동영상 등
- 선거정보** 역대선거정보 등 선거에 관한 모든 통계자료 등
- 선거법령정보** 자주 찾는 선거정보, 법령검색, 판례검색, 자료검색 등
- 정책·공약알리미** 유권자 공약제안, 정당·후보자 정책·공약 확인·비교 등
- 정당·정치자금** 정당정보, 정치자금제도, 정치후원금 안내 등
- 선거관리위원회 소개** 지위 및 연혁, 임무와 비전, 업무범위 등

학교선거 매뉴얼



학생과 교원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함께 합니다.

● 선거연수원 이란?

1996년에 설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유권자, 선거·정당관계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학생, 대학생, 교원,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 소개

구분	과정명	내용	기간·방법	일정
미래유권자 연수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고등학교 학생회장 등을 대상으로 미래지도자로서 올바른 리더십 함양 및 토론방법 등 훈련	3일, 집합	7월
	청소년리더 연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민주시민의 소양 및 토론과목 등 강의	1일, 출강	연중
	새내기유권자 연수	수능 후 고3학생 및 군인 등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가 가져야할 소양 등 강의	1일, 출강	11 ~ 12월
	민주주의 선거교실	중학생 대상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민주주의와 선거의 기본원리 알아보기, 선거포스터 만들어보기, 좋은 공약에 대해 토론해보기)	1일, 집합 또는 출강	하반기
교원 연수	민주시민교육과정 직무연수	초·중등 교원대상 민주시민교육과정으로 과정 이수시 직무연수로 인정	5일, 집합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 자세한 사항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civicedu.co.kr)를 참조하세요.

●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콘테스트

- 주 제 : “참여하는 시민! 꽃피는 민주주의!”
※ 강의, 연극, 춤, 노래 등 제한 없음.
- 참가대상 : - 일 반 부 : 유권자 누구나 - 청소년부 : 중·고등학생
- 접수기간 : 3월중
- 대회일정
- 동영상심사 및 예선대회 : 4월중
- 본선대회 : 5월중(매년 ‘유권자의 날’ 인 5월 10일 전 · 후 개최)
- 접수방법 :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http://www.civicedu.go.kr)
- 시 상 금 : 총 2,100만원 정도

● 웹진 ‘다다익選’ (www.다다익선.kr) & 간행물 ‘선거, 봄(여름·가을·겨울)’

- 민주시민교육 웹진 ‘다다익選’, 계간지 ‘선거, 봄(여름·가을·겨울)’ 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웹진과 간행물은 누구나 쉽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선거 매뉴얼

초·중·고등학교 교사용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2008. 12.)
수정·보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2015. 5.)
디자인 성문기획